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17년 05월 11일

사북읍장 영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이**	이** 1923-03-05	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복일안길	거주불명등록 --
박**	박** 1949-02-22	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삼삼길	거주불명등록 --
조**	조** 1993-02-16	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동탄길	거주불명등록 --